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1,128,447	18,933,853
일반회계	610,410,365	18,312,311
특별회계	20,718,082	621,542
기타특별회계	20,718,082	621,542
상수도특별회계	4,872,034	146,16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42,327	31,2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3,697	22,011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313,139	99,394
주차장특별회계	282,980	8,4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9,578	2,087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257,823	217,735
하수도특별회계	3,146,504	94,39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78,58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